

[별지 제49호의3 서식] 삭제 <2017. 10. 19.>

### 작성방법

1. ⑥란은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일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4. ⑫란 중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업소명을 적고, 운반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⑬란 중 처리구분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앞쪽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